

##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

[시행 2013.08.14]  
(일부개정) 2013.08.14 조례 제941호

관리책임부서명 : 기획예산담당관  
관리책임전화번호 : 061-659-3417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주민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
2.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

**제3조(법령준수 의무)**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주민의 권리)**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**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** 시장은 예산편성방향, 주민참여예산의 범위,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, 인터넷 홈페이지, 게시판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** ①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. (신설 2013. 8. 14)

③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 (제2항에서 이동, 개정 2013. 8. 14)

**제8조(의견 제출)**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결과 공개)**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필요시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위해 설명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**제10조(위원회운영 등)**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, 협의회,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(2006. 10. 20 조례 제560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(2013. 8. 14 조례 제941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